

행정기관명

수신

(경유)

제목 **이의신청(심판청구)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**

귀하(귀 법인)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을(를)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,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 또는 청구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상호 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	
대리인	성명(법인명)			
	주소(영업소)			
신청서(청구서) 제출일			결정기한	
제기기관		심판청구(조세심판원), 소송(법원)		

끝.

발 신 명

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